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0

발의연월일: 2020. 10. 20.

발 의 자:정일영·양기대·허종식

이성만 • 이용빈 • 문진석

김교흥ㆍ허 영ㆍ김수흥

윤후덕 · 김남국 · 민형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오랜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여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게끔 하여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

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함(안 제9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80(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표"를 "다음 표 1"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40
만 70세 이상	100분의 50

다만,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표 2에 따른 거 주기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丑 2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40
20년 이상	100분의 50

⑧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제1항·제3항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⑤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	
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	
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	
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u>100분의 80(과</u>
<u>100분의 80</u> 의 범위에서 중복하	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여 적용할 수 있다.	<u>는 100분의 90)</u>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6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	
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 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10	0 분	- 의
미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10	0 분	- 의
미	간				30		
ㅁւ	70세	이사			1 0	0 분	- 의
'L'	10/1	1 0			40		

①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100분의
미만	30
만 65세 이상 만 70세	100분의
미만	40
만 70세 이상	100분의
한 70세 의경	50

(<i>i</i>)
<u>다음 표 1</u>

로 한다. <단서 신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신 설>

------. <u>다만, 해당 주택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표 2에 따른 거주기 간별 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丑 2

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20년 미만	100분의 40
20년 이상	100분의 50

⑧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과세표 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 정한다)에 해당하는 납세의무 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 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